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행복Together 정기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『행복Together 정기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『행복Together 정기예금』(구, 하나은행, 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거치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,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</u>으로 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 ~ 제 8 조</b>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『행복Together 정기예금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“행복Together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거치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</u>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(좌 등)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로 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 ~ 제 8 조</b> (좌동)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추가</p>